第294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임 시 회 의 록)

第 14 號

國 會 事 務 處

2010年11月25日(木) 午後 2時30分

議事日程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3.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

附議된案件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1
2.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 2
3.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장 제출) ····· 6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6
o 5분자유발언 ····· 7

(14시41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깥에 계시는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틀 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무고한 주민들과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44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안 부수법안은 아니지만 의사일정 제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14시45분)

○의장 박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위원장대리 김재균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대 국회에 들어와서 더욱 심해진 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SSM과 골목상권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2008년부터 수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행정 및 통상 당국과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3일 기나긴 산고 끝에 지난번의 유통산업전발전법과 함께 이번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로 7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법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상 당국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통상 당국의 벽 앞에 우리 국회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통상 당국자의 한마디에 국회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개방에 따른 피해 집단을 아우르지 않는 통상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과 이번 상생법 대안은 WTO와 FTA 개방에 따른 피해 집단인 우리나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그마한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통과시킨 유통법과 오늘 상정된 상생법이 SSM을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앞으로라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번 대안에서는 최근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이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는바, 대기업의 체인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 동네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과 이정희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한정하고, 체인점포 개점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 한정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둘째,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위탁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또는 다수의 기업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그러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7인, 반대 7인, 기권 5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14시51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원유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원유철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긴급 채택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무차별한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이 같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과 추가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UN헌장 제2조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피해 지역에서 대피 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여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남북 문제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면으로서 그 엄중함에 대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며,

일곱째, 대한민국 국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천명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안의 긴급성·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국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영선 의원입니다.

북한군의 무차별 공격에 의해 희생된 장병과 국민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북한군의 만행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은 연평도 주민 여러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3일 북한군이 우리의 무고한 민간인과 군인에게 교전규칙에도 없는 짐승보다 못한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5000만의 공분을 살 북한군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의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 결의안은 우리가 끌어안고 인도적인 도움을 줘야 할 북한이 아니고 이 만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북한군 혹은 김정일 정권의 무력도발이 아닌 공격에 대한 규탄이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연평도에서의 북한군의 만행은 우발적인 도발이 결코 아닙니다. 열압력탄과 같은 인명 살상과 대규모 화재를 유발하는 비인간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까지 살상을 감행한 무자비한 무력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결의안은 제목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규탄 결의 내용을 보면 각 정당이나 국회에서 우리 군의 대응방식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하고 강한 비난을 했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군의 위협 수준의 테러를 규탄했던 결의 내용과 전혀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이러한 평이한 결의안 내용이 과연 우리 국민의 억울함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 마을까지 살상무기로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민간인까지 죽인 북한군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 민간인을 살상한 무력공격이 재발할 경우에 어떻게 응징하겠다는 내용 또한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결의안만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김정일 정권과 북한군에게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5000만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단호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사건 합의서 수준에 불과한 이 결의안 내용을 연평도에 포격을 명령하고 진두지휘한 김정일 정권과 북한군 수뇌부가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분노와 결연한 의지를 과연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결의안은 천안함 사태 이후 아무런 보복조치도 하지 못한 우리 군을 우습게 보고 있는 김정일과 북한군에게 다시 한번 우리 정부와 군, 그리고 국회를 얕잡아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북한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신당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이번 연평도 북한의 도발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신 두 분의 장병, 그리고 두 분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대단히 복잡한 심정으로 이 반대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정전협정 이후로, 유사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의 북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함께 저는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번 도발행위는 용납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또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북한정권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동족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싸우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의 저변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강고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규탄 결의문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정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옹호가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북한 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동, 최근의 3대 세습 문제까지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칫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군사적 대응만을 국회에서 결의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지금 정부 일각과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강경한 대응, 몇 배의 보복, 즉각적인 응징, 과연 이런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짚어 내고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담아내야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이제!」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럴 때만이 저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대표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행동에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북한의 행위와 그 행위를 비판한 행위의 의미는 저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정서가 분노해 있고 북한에 대한 규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정서의 한편에는 군사적 대응으로 확전이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창피하다!」 하는 의원 있음)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저는 이성적으로 규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 결의문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에 저는 이 결의문 자체의 많은 부분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응 중심의 결의문은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 이성적이야?」 하는 의원 있음)

(「말이 되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박희태 다음은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議員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평도가 불탔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격당했습니다. 군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이 사망했습니다. 대낮에 민간인을 향해서 포격을 가한 전례가 없는 치명적 도발입니다.

지난 수해에 정부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행했고 남북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시켰습니다. 바로 오늘 남북 간에 적십자회담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향한 물밑대화 속에서도 북한은 천안함 사태를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야기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3대를 잇는 권력 승계로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는가 하면 두 차례의 플루토늄 핵실험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깡패정권입니다.

이렇듯 골치 아픈 북한 정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남남갈등으로 치달았습니다.

과연 대화가 없어서, 이명박 정부가 강경책을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유화정책을 써서 북한의 군사력 팽창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까?

적전분열, 이것이 공격당한 대한민국의 참모습이어야 합니까? 이것이 G20를 유치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성장과 역동적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실체입니까?

국민을 향해서 총질을 한 김정일 정권, 그들이 주적이 아니면 과연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남북평화에 도움이 됩니까? 북한의 무력도발과 독재정권의 3대 세습은 오늘 이 연평도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포를 장난감으로 여긴다는 김정은 세습이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데는 무슨 득이 되는 겁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천안함 사태라는 미증유의 군사테러 앞에서 분열하고 무기력했던 대한민국 그것이 또 한번 화를 촉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열과 무기력이 김정일 정권과 그 아들의 권력 계승에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분열과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정치 레토릭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오로지 권력 계승과 정권 안위에만 집착하는 김정일 정권이 잘할 수 있는 유일한 특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갈라지면 안 됩니다. 국가 안보의 위기 앞에서 정파와 이념 대립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상황도 종료되기 전에 책임론으로 적전 분열하는 모습은 바로 병들어 가는 김정일 정권을 기사회생시키는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야가 초당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모습을 보여 줍시다.

결의안의 내용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정치 레토릭이나 이념에 우선합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국민의 희생 앞에 우리 모두 머리를 숙여 애도를 표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지도발전에 대비한 신속 대응, 그리고 확장 억제에 주력하면서 민심을 수습할 때입니다.

특히 대피 중인 연평도 주민의 구호와 복구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1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장 제출)

(15시14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장대리 신학용 우선 고 서정우 해병 하사 그리고 고 문광욱 해병 일병의 명복을 빌어 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 신학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협력을 촉구하고 FIFA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경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경기시설 확보 및 지원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표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2002년 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지가 2010년 12월 3일 FIFA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이 결의안 채택은 우리나라가 2022 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그러면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할 때 전자기기의 오조작으로 몇몇 의원의 투표 결과가 틀리게 나갔습니다.

잘못된 투표 결과는 확인을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분은 김영우 의원, 윤상현 의원, 구상찬 의원, 전재희 의원, 김효재 의원, 이애주 의원, 이혜훈 의원, 이상 의원님들은 반대로 나왔지만 찬성이고……

틀림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시 안 해 줍니다.

그다음 권영진 의원은 기권이지만 원래 마음이 찬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속기록을 정정하고 그대로 공식화하겠습니다.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9분)

○의장 박희태 다음에는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5분자유발언

○의장 박희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감사합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입니다.

중국 초나라 때의 시입니다.

“진실로 용감하고 또한 무예도 뛰어나며 끝내 굳세고 강하니 능멸하지 못한다. 육신은 이미 죽었어도 정신은 영험하니 그대 혼백이여, 귀신 가운데 영웅이다.” 이 시를 전사한 두 명의 우리 젊은 장병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슬픔보다 커다란 참척(慘慽)의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고 계실 부모님께도 위로의 뜻을 표해 드립니다.

북한은 이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영토에 포탄이 떨어지고 군인은 물론이고 민간인 희생까지 초래한 이번 만행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사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북한이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한 당국은 재발방지와 사과와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연평도 도발 사태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포탄이 떨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우리 연평도 해병 부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응 사격한 장한 기개를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우리 군이 교전수칙을 엄밀하게 준수하고 공군 전투기를 즉각 출격시켜 더 이상의 도발을 억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응과는 정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 “몇 배로 응징하라.” “막대한 응징을 하라.”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관리하고 대응함에 있어 청와대는 이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 우리 국토 전역이 북한 도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느끼는 바입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섬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한반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북정책을 깡그리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전역이 연평도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유린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대결정책은 결국 중동처럼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핫라인이 개설되어 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핫라인도 끊어진 채 일부에서 이야기하듯 강경 발언만 난무할까 걱정입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고민과 걱정이 또한 있습니다. 용맹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전쟁에 대비하면서 평화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남북관계를 혼돈으로 만드는 강경 발언은 전략적 소통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일찍이 냉전시대,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모택동과 대화를 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옛 소련과 소통한 것에서 대통령께서는 배워야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대표를 모시고 당 지도부가 연평도를 방문해서 유리창 깨진 군

버스로 연평도를 돌아봤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불타고 찢긴 민가와 그리고 군 막사를 돌아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꽃다운 우리 청년 둘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노인 두 분을 죽였습니까?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인 제공은 북한의 해안포가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무자비한 북한의 연평도 침공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북한의 간을 이렇게까지 키워 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의 연평도 침공은 인재(人災)라고 생각합니다. 3·26 천안함 폭침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우리 정부, 생때같은 우리 아들들 46명을 차가운 물 속에 수장시키고도 얼이 빠져 있는 우리 국군, 그리고 확고한 국가안보의식도 없이 영토 수호마저 어정쩡한 중도실용으로 어물쩍 비겁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국군최고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도 분명히 죄인입니다.

물론 연평도 침공 사흘 후에야 오늘 그렇게 부족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정신 빠진 우리 국회, 국가 안보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 국회는 죄인 중의 죄인, 큰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평도 침공을 가능하게 만든 죄인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에 8월에도 북한은 NLL을 넘어서 사격을 했고 급기야는 민간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전시에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ICC 로마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전쟁 범죄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포구를 열어 놓고 있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연평도 '침공'이 아니라 '도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서해 5도와 NLL을 사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십니까? 서해 5도와 NLL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인 지역입니다.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는 대통령의 1차적인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 같은 대통령의 1차적 책무를 인정하신다면 유사시에 몇 시간씩 청와대 벙커에 들어갈 때마다 입으시는 그 전투기 조종사 같은 잠바부터 벗어 던지십시오. 국민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연이은 북의 침공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앞에 떳떳이 나와서 사과하시고 기자회견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이라도 연평도를 직접 방문하십시오.

대통령이 금지옥엽처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국민과 그리고 국군이 어떻게 죽어 갔는지 그리고 국민의 보금자리가 어떻게 처절하게 파괴됐는지 가셔서 작은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대만의 금문도처럼 연평도를 요새화하십시오. 피난민이 되어 이부자리를 이고 싸고 들고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던 연평도 주민들은 편한 마음으로 다시는 돌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안심하고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만의 금문도보다 더 단단한 철옹성으로 연평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연평도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애국자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해안포, 곡사포만 쏜 게 아니라 상륙작전을 했더라면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자위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전시라는 선포를 대국민 앞에 해야 합니다.

그다음,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침략을 받으면 곧 그것은 미국이 침략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한미 두 나라 간의 조약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영토를 침략당했는데도 우리 대통령은 30분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바마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평화는 결코 비굴한 웃음으로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돈 몇 푼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더 이상 비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십시오.

이명박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

○의장 박희태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우제창 의원 경기 용인 처인 출신 민주당 소속 우제창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만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절반으로 대폭 삭감됐던, 지금은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이름이 바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대부분 복원된 것입니다.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찰을 저지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년 예산을 한나라당이 살려 낸 것입니다.

예산을 반으로 깎고 정보 및 수사기관, 다시 말해서 국정원·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으로 예결소위를 통과시켰는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이를 번복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모든 야당이 전액 삭감, 폐지 의견을 가지고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갔고 끝내 관철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원관실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시각인 것입니다.

심지어 두 분의 한나라당 위원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지원관실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발언을 하였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넘어서 같은 당의 동료 의원마저 사찰을 당했는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원관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름만 바꾸어서 살려 놓는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사찰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의지를 예산 의결을 통해 천명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법 사찰 조직에 불법 예산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범죄 집단에 국민의 혈세를 의결해 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지원관실을 내세워서 박영준과 영포라인이 그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찰 업무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지원관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직동팀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총리실의 공조직과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불법적으로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하고 그 불법을 은폐하고자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까지 동원한 '대포폰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관리관실의 예산이 예결위로 넘어갈 것입니다. 예결위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마지막 가진 기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안상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지원관실의 예산을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애초에 정무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경찰·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다시 삽입하십시오.

불법 민간인·정치인 사찰의 모든 진상은 결국 반드시 밝혀집니다.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 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 늦기 전에 이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무위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국민의견, 그리고 국민여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23일 연평도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사한 우리 국민의 아들, 국군 해병 하사 서정우, 문광욱 일병, 죄 없이 운명을 달리한 민간인 사망자 두 분께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북측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아울러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로 어제, 24일 정부는 다시금 노동자, 서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정작 발표는 3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합법이라고 규정

했습니다.

정부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의 현실은 형편없습니다. 공장 조립벨트 주위에 붙여 놓은 청테이프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역을 구분했고, 투명 아크릴판으로 작업장을 분리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로 나아간다는 기업들이,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부가 이런 염치도, 상식도 없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대법원에서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대기업이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 요구를 받은 고용노동부도, 중앙노동위원회도 모두 노동자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현대자동차가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법조계를 비롯한 학계에서도, 국민들도 모두 인정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한시라도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엉터리 발표를 통해서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사태는 명백히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부정하고 있는 정부와 법을 위반하고 돈에만 눈이 먼 현대자동차의 책임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 운영은 단순히 계약서 체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몽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개인의 자리에서 이루어 낸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의 역사상 유례없는 흑자는 바로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삼성의, 대기업들의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결과입니다.

또한 2008년 금융경제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을 버티게 해 준 것은 바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이었습니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떠안으면서도 환율을 방어해 주었기에 대기업들이 유사 이래 최대 적자 위기에서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최근 3년간 추가로 고용한 인원은 단 172명에 불과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환율로 혜택을 본 금액이 5조 8000억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현금자산은 무려 7조 9000억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현금보유 회사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성과를 재투자를 한다든지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기는커녕 주주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대자동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데는 122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현금 7조 9000억의 단 1.5%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준 보조금 5조 8000억의 2%만 사용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몰염치하게 배짱을 부리는 현대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정규직화를 정부가 나서서 현대자동차에 촉구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5차 본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5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 영 차명진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이영애

기권 의원(3인)

강성천 공성진 조전혁

(김영우·이혜훈·김효재·전재희·구상찬·윤상현·이애주·권영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55인, 반대 의원 1인, 기권 의원 3인임)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271인)

찬성 의원(261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흥길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최철국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조승수

기권 의원(9인)

공성진 곽정숙 권영길 송영선
유성엽 유원일 이정희 장세환
홍희덕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259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최종원

기권 의원(2인)

안민석 장병완

(최재성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59인, 기권 의원 2인임)

○출석 의원(28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최철국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출장 의원(1인)

한선교

○청가 의원(7인)

고승덕 심재철 이미경 이상민
이종걸 최구식 최영희

○개의 시 재석 의원(239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윤진식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 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종원 최철국 추미애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산회 시 재석 의원(41인)

강기정	강명순	권영길	권영세
구상찬	김성곤	김성동	김영록
김영선	김영진	김유정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나경원
박선숙	박은수	박지원	박희태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신 건
양승조	원희룡	유선호	이명수
이성남	이용희	이윤석	이정희
이춘식	정범구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허 천	홍재형	홍희덕
황진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권오을
의사국장	이종후

○출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정의화

11월 22일 국회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10. 11. 22)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이두아	·	한나라당	2010. 11. 12
	·	노철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김우남	이석현	민주당	2010. 11. 16
	이석현	김우남		2010. 11. 18

○의안 제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0 박진·강길부·권성동·김기현·김낙성·김성회·김재경·김진표·김태환·박민식·유기준·이명규·이상권·이종혁·이한성·이화수·정양석·정영희·정태근·최연희·홍일표 의원 발의)

11월 12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0 박진·강길부·권성동·김기현·김낙성·김성회·김재경·김진표·김태환·박민식·유기준·이명규·이상권·이종혁·이한성·이화수·정양석·정영희·정태근·최연희·홍일표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0 유일호·강길부·배영식·유재중·강명순·나성린·정희수·안효대·신지호·배은희·조전혁·이은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0 장윤석·현경병·이찬열·최경희·이한성·이인기·신상진·박순자·주성영·정갑윤 의원 발의)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0 최영희·전현희·박은수·이미경·송민순·김우남·김상희·양승조·이찬열·백원우 의원 발의)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현병철) 사퇴 촉구 결의안

(2010. 11. 10 곽정숙·이정희·강기갑·박은수·홍희덕·최문순·권영길·전혜숙·유성엽·이미경·홍영표·서갑원 의원 발의)

11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임동규·김정권·이인기·안경률·정수성·김소남·유정현·박대해·신지호·김태원·전혜숙·권영진·이애주 의원 발의)

11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무성) 징계안

(2010. 11. 11 강기정 의원 요구)

국회의원(황영철) 징계안

(2010. 11. 11 강기정 의원 요구)

이상 2건 11월 12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2011년도에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3건 2010. 11. 11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1 정부 제출)

11월 1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1 김학송·김옥이·심재철·윤영·손숙미·정하균·김금래·김세연·김소남·조진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1 유재중·현경병·권영진·손숙미·현기환·유기준·이진복·김정훈·이종혁·이춘식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1 유재중·현경병·권영진·손숙미·현기환·유기준·이진복·김정훈·이종혁·이춘식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1 이애주·김기현·조진래·윤석용·신성범·이인기·안형환·김호연·신영수·이춘식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1 김영록·김성곤·김춘진·박은수·안규백·오제세·유원일·이춘석·전현희·조경태·주승용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1 김영록·김성곤·김춘진·박은수·안규백·오제세·유원일·이춘석·전현희·조경태·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박민식·권영진·김기현·김성식·서병수·원희룡·이범래·이진복·임해규·정해걸·홍준표 의원 발의)

11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임동규·김정권·이인기·안경률·정수성·김소남·유정현·박대해·신지호·김태원·전혜숙·이애주·안홍준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조진형·김영진·김소남·이경재·조문환·이윤성·박준선·정해걸·이춘식·박민식·한선교·안형환·이사철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정의화·이명수·김을동·이사철·여상규·안규백·황영철·박영아·김정훈·김학송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정의화·이명수·김을동·이사철·여상규·안규백·황영철·박영아·김정훈·김학송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김성식·권영세·유승민·서병수·김성곤·강봉균·조배숙·이한구·이혜훈·김광림·조문환·김성태·권영진·권택기·나성린·유일호·오제세·권경석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김성식·서병수·이혜훈·김광림·조문환·김성곤·조배숙·이한구·김성태·권영진·권영세·강봉균·권택기·나성린·유일호·유승민·오제세·권경석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강길부·나성린·최병국·안효대·정갑윤·김성조·윤진식·유일호·신영수·이한구·김기현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강길부·나성린·최병국·안효대·정갑윤·김성조·윤진식·유일호·신영수·이한구·김기현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조진형·김영진·김소남·이경재·윤석용·박준선·정해걸·이춘식·박민식·안형환·이사철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강승규·김성동·한선교·김용태·허원제·이종혁·조전혁·나경원·황진하·박준선·이혜훈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강승규·김성동·김용태·이종혁·

조전혁·나경원·황진하·박준선·이혜훈·이애주 의원 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강승규·한선교·김성동·김용태·허원제·이종혁·조전혁·나경원·황진하·박준선·이혜훈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정의화·이명수·김을동·이사철·여상규·안규백·황영철·박영아·김정훈·김학송 의원 발의)

11월 1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2 정의화·이명수·김을동·이사철·여상규·안규백·황영철·박영아·김정훈·김학송 의원 발의)

11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5 안상수·김정훈·원희목·강석호·서상기·나성린·권영진·이춘식·정영희·이애주·안형환·백성운·김금래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5 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이한성·김태환·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5 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이한성·김태환·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5 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김세연·이한성·김태환·박영아·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5 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김세연·이한성·김태환·박영아·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5 유선호·강기갑·김효석·조승수·최문순·조영택·문학진·백재현·송민순·박은수·정동영·김춘진·김재윤·우윤근·이성남·이종걸 의원 발의)

11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5 유선호·강기갑·김효석·최문순·최재성·조영택·김성곤·문학진·백재현·송민순·양승조·신낙균·조배숙·박은수·정동영·김춘진·김재윤·우윤근·이성남·박영선 의원 발의)

11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 2010. 11. 15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5 한선교·손범규·이인기·유성엽·이애주·이한성·안홍준·김태원·안형환·정갑윤 의원 발의)

11월 1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5 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이한성·김태환·박영아·조원진·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

1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김우남·조경태·심대평·김성수·유성엽·안형환·김영진·김효재·백재현·이성헌·신상진·조승수·이명수 의원 발의)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김우남·이종걸·이석현·장병완·박은수·주승용·김영록·김효석·최영희·강기정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김우남·최재성·신건·이종걸·이석현·장병완·백원우·박은수·주승용·김영록·김재윤·김효석·유성엽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김태원·정갑윤·김정권·한선교·이한성·안홍준·유성엽·이명수·안효대·손범규·임동규·고흥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김우남·송영선·김성수·조정식·유성엽·강창일·박주선·조경태·정범구·권영세·이미경·이성헌·김재윤·박선숙·우제창·유원일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강창일·박영선·최규성·유성엽·정동영·송민순·장세환·이윤석·김영진·문학진·신낙균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강창일·김효석·최규성·송민순·장세환·이윤석·김영진·문학진·신낙균·조정식 의원 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강창일·김효석·최규성·송민순·장세환·이윤석·김영진·문학진·신낙균·조정식 의원 발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김태원·정갑윤·김정권·한선교·안홍준·안효대·손범규·홍영표·임동규·이윤성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이한성·김태환·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이한성·김태환·구상찬·김선동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강창일·최규성·이찬열·조정식·박영선·김효석·강기갑·유선호·최문순·조영택·송민순·장세환·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강창일·김성곤·최규성·유성엽·정동영·전혜숙·장세환·이윤석·김영진·문학진·신낙균 의원 발의)
11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박종근·이한성·권경석·임영호·김세연·오제세·이성헌·원유철·허태열·배영식·홍준표·정수성·박우순·우제창·박준선·김영선·권택기·정옥임·전병헌·이용섭·유성엽·최연희·김광림·김성조·이범래·이사철·우윤근·김용태·이진복·이용희·홍재형·정갑윤·이재선·문학진·장제원·권영세·정희수·조영택·김효재·이인기·조원진·주호영·김용구·서상기·서병수·김성곤·김태원·김정권·강길부·주성영·조문환·이강래 의원 발의)
1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주승용·최철국·김재균·조영택·정장선·김성곤·노영민·장세환·박은수·이춘석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오제세·정동영·홍영표·양승조·김효석·김재윤·김춘진·최문순·김용구·신낙균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6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6 정부 제출)
11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6 박종근·서상기·오제세·강길부·조원진·최연희·김용태·이성헌·김용구·

김세연·주성영 의원 발의)

11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임동규·손범규·조승수·안홍준·이한성·홍영표·이인기·신성범·이은재·김태원 의원 발의)

11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강창일·이윤석·김영진·문학진·신낙균·조정식·최규성·김효석·이종걸·추미애 의원 발의)

11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강창일·이윤석·김영진·문학진·신낙균·조정식·최규성·김효석·이종걸·추미애·전혜숙 의원 발의)

11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강창일·이윤석·김영진·문학진·신낙균·조정식·최규성·김효석·이종걸·추미애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오제세·전병헌·김영록·정장선·우제창·김용구·주승용·최철국·유선호·김춘진·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문학진·추미애·백원우·유선호·장세환·이석현·백재현·김영진·조정식·정동영·조승수·박은수·강기정·이성남·우제창·박우순·강창일·김성곤·양승조·김효석 의원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문학진·추미애·백원우·유선호·장세환·이석현·백재현·김영진·조정식·정동영·조승수·박은수·강기정·이성남·우제창·박우순·강창일·김성곤·양승조·김효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조배숙·김재윤·양승조·최문순·서갑원·전혜숙·송민순·장세환·최규성·김영진·김혜성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0. 11. 17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송민순·강기정·강창일·김동철·김부겸·김성곤·김재윤·김태원·박은수·박주선·서종표·안규백·양승조·유선호·이석현·이용섭·이윤석·이찬열·장세환·조영택·최규식·최종원·홍영표 의원 발의)

11월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0. 11. 17 정부 제출)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홍희덕·강기갑·곽정숙·권영길·유원일·이미경·이정희·조승수·최문순·홍영표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신영수·홍영표·강성천·이정선·이종혁·박대해·이애주·강길부·강석호·안홍준·고승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7 정부 제출)

11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7 최재성·신학용·백원우·이춘석·김우남·박지원·홍재형·이찬열·김상희·안민석 의원 발의)

11월 18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이정선·권성동·김기현·김소남·김호연·노철래·송영선·유정현·이명규·이인기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김정·조진래·김을동·이성헌·박선영·노철래·윤상일·송훈석·김혜성·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정갑윤·안효대·유재중·이인기·김태원·강길부·정수성·김소남·이한성·노철래·최병국·한선교·홍영표·김세연 의원 발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8 정부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백원우·최재성·김효석·박우순·조정식·최문순·전병헌·박은수·이찬열·전혜숙·김춘진·문학진·이춘석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이명수·김용구·김태원·변웅전·김창수·임영호·이인기·정의화·김을동·이은재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정갑윤·안효대·현경병·유재중·이인기·김태원·강길부·이한성·이진복·노철래·최병국·김세연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정장선·김부겸·김재균·백재현·서갑원·오제세·원유철·전혜숙·천정배·최문순·최종원·최철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정장선·김부겸·김재균·백재현·서갑원·오제세·원유철·전혜숙·천정배·최문순·최종원·최철국 의원 발의)

11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김정·손범규·심대평·김옥이·김학송·김장수·이성헌·유성엽·고승덕·신상진·김혜성·배영식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8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8 정부 제출)

11월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이주영·정갑윤·이은재·정하균·박준선·조전혁·박민식·진성호·이화수·박영아·유기준·조문환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이주영·정갑윤·이은재·정하균·박준선·조전혁·진성호·박민식·이화수·박영아·유기준·조문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國家債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이주영·정갑윤·이은재·정하균·박준선·조전혁·박민식·진성호·이화수·박영아·유기준·조문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이주영·정갑윤·이은재·정하균·박준선·조전혁·진성호·박민식·이화수·박영아·유기준·조문환 의원 발의)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이주영·박민식·박영아·박준선·유기준·이은재·이화수·정갑윤·정하균·조문환·조전혁·진성호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8 이주영·박민식·박영아·박준선·유기준·이은재·이화수·정갑윤·정하균·조문환·조전혁·진성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이사철·송훈석·이윤석·김우남·정해걸·정희수·한기호·김태환·안형환·박준선 의원 발의)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0. 11. 19 정부 제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이진복·조정식·박민식·류근찬·허천·유성엽·현기환·박보환·강봉균·이범관·허원제·정갑윤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이명박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박지원·권선택·권영길·이용경·조승수·유성엽 의원 외 105인 발의)

11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김영선·권영진·안효대·유승민·고승덕·김태원·김충환·황우여·차명진·이범관·손범규·조해진·이해봉·조배숙·김옥이·박선영·김혜성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이은재·박순자·정갑윤·이두아·김영록·강성천·나성린·김소남·이명수·이화수·이주영·김세연·양승조 의원 발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이은재·박순자·정갑윤·이두아·김영록·강성천·나성린·김소남·이명수·이화수·이주영·김세연·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2010. 11. 19 정부 제출)

11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최재성·백원우·이춘석·이낙연·박은수·권영길·백재현·김상희·구상찬·김재윤·원혜영 의원 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정장선·김부겸·백재현·전혜숙·최철국·최문순·천정배·서갑원·오제세·김재균·원유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이은재·박순자·정갑윤·이두아·김영록·강성천·나성린·김소남·이명수·이화수·이주영·김세연·양승조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이애주·강명순·공성진·김성동·김을동·김충환·서상기·신성범·유성엽·유재중·최경희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이낙연·원혜영·정장선·신성범·정동영·김효석·전혜숙·양승조·서갑원·홍영표·최영희·최인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오제세·임영호·유성엽·이인기·김효석·김재윤·김춘진·최문순·최철국·김용구·정장선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오제세·임영호·유성엽·이인기·김효석·김재윤·김춘진·최문순·최철국·김용구·정장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백원우·최재성·김효석·조정식·최문순·박은수·이찬열·전혜숙·김춘진·문학진·이춘석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백원우·최재성·김효석·조정식·최문순·박은수·이찬열·전혜숙·김춘진·문학진·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이정선·임동규·이해봉·이성헌·유성엽·이낙연·황진하·오제세·김성곤·신상진·고승덕 의원 발의)

11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주성영·강성천·이인기·주호영·

유승민·김영우·전재희·나경원·정두언·정태근 의원 발의)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0. 11. 22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권영세·안형환·유일호·송민순·이윤성·이사철·손숙미·임영호·이상권·박준선·김성식 의원 발의)

11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주승용·최철국·김재균·조영택·정장선·김성곤·노영민·장세환·박은수·장병완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김정·조진래·김을동·이성헌·박선영·송훈석·김혜성·이찬열·김선동·김정권 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김정·조진래·김을동·이성헌·박선영·송훈석·김혜성·이찬열·김선동·김정권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장세환·김상희·이석현·유선호·김영진·강창일·주승용·문학진·최규성·김재윤·이종걸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장세환·김상희·이석현·유선호·김영진·강창일·주승용·문학진·최규성·조승수·김재윤·이종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박기춘·이찬열·박우순·김성곤·최문순·이인기·손범규·이한성·유성엽·박주선·최규성·김재윤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김우남·강창일·유성엽·유원일·김효석·박은수·신건·최인기·김영록·최재성·최영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이윤성·윤석용·유기준·이한성·신상진·김정훈·임영호·이인기·손범규·전혜숙·고흥길·이석현 의원 발의)

11월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서종표·김성곤·김장수·신학용·조경태·김영진·안규백·박기춘·최규식·문희상 의원 발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추가 서훈 등에 관한 특별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양승조·변재일·최영희·박은수·이춘석·김춘진·백원우·김충조·조영택·박영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김우남·최재성·강창일·최영희·백재현·최인기·김영록·강기정·이종걸·유성엽 의원 발의)

11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김우남·최재성·김효석·강창일·최영희·박은수·신건·백재현·최인기·조정식·유성엽 의원 발의)

11월 23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김우남·최재성·강창일·최영희·박은수·백재현·최인기·김영록·조정식·강기정·유성엽 의원 발의)

11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김우남·강창일·유성엽·유원일·김효석·최영희·박은수·신건·최인기·최재성·김영록 의원 발의)

11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김우남·강창일·유성엽·유원일·김효석·최영희·박은수·신건·최인기·최재성·김영록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2 김우남·강창일·유성엽·유원일·김효석·최영희·박은수·신건·최인기·김영록·최재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해양경비법안

(2010. 11. 23 정부 제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김선동·권영진·손범규·이한성·최경희·이명수·김세연·이인기·손숙미·남경필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임동규·이한성·임해규·이명수·김태원·안효대·윤상일·김소남·진영·김정권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4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류근찬·윤영·김영진·임영호·김영록·변웅전·강기갑·주승용·이한성·김창수·김낙성 의원 발의)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정수성·이종혁·이인기·한기호·박대해·김을동·정갑윤·최병국·임동규·김소남·김태원·김정권·안경률·유정현·진영·윤상일·이명수·신지호·안효대·김충조·문학진·장세환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오제세·전병헌·김춘진·유성엽·김영록·백재현·양승조·이경재·이인기·최철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강창일·최규성·이종걸·추미애·조영택·이낙연·박기춘·장세환·박선숙·김영진 의원 발의)

11월 2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임동규·이한성·이명수·김태원·안효대·윤상일·김소남·진영·김정권·이인기 의원 발의)

1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임동규·이한성·안홍준·유성엽·이종혁·이명수·김태원·안효대·윤상일·김소남 의원 발의)

11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강창일·최규성·이종걸·추미애·조영택·이낙연·박기춘·장세환·박선숙·김영진 의원 발의)

11월 24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한선교·안홍준·손범규·김태원·정갑윤·유성엽·이인기·고승덕·김을동·김성동·강승규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전혜숙·김춘진·천정배·조영택·양승조·장병완·장세환·김상희·안규백·김부겸·원혜영·서갑원·정장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김소남·백원우·안효대·김낙성·이인기·정갑윤·이한성·이정선·원희목·임동규 의원 발의)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김소남·백원우·안효대·김낙성·이인기·정갑윤·이한성·이은재·홍정욱·

이정선·원희목 의원 발의)

11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홍진표) 선출안

(2010. 11. 24 의장 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김상희·장세환·장병완·이미경·안민석·문학진·김재윤·이용섭·박선숙·유성엽·김성곤·최문순·최재성·최영희·조승수·권영길·김부겸·서갑원·조배숙·김영진 의원 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김상희·장세환·장병완·최종원·김재윤·최문순·전혜숙·권영길·최재성·박은수·서갑원·조정식·강창일·김영진·김부겸·강기정·문학진·정동영·안민석·강기갑·전현희·이미경·유성엽·이용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사회서비스법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서갑원·김재윤·장병완·김상희·정장선·김우남·전혜숙·최문순·백재현·김효석·추미애·박은수·전병헌·박기춘·조영택·전현희·박우순·김충조·김영진·신학용·최재성·김재경·윤석용·이화수·홍일표·이상권·정태근·장세환·문학진·허원제·한선교·조윤선·신성범·황영철·김성수·최구식·장광근·정진섭·정희수·이철우·김성동·박선숙·송민순·박병석·정세균·황우여·박주선·김성태·구상찬·김광림·안형환·김영선·강창일·강봉균·이찬열·원혜영·이윤석·김유정·김성곤·김희철·이용섭·정범구·박지원·진성호·박준선·이학재·이경재·안민석·박민식·이종혁·오제세·이윤성·장윤석·정옥임·권영세·원희목·우윤근·이미경·최종원·최인기·김동철·변재일·홍영표·김진표·최철국·정양석·김선동·김효재·남경필·김기현·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 활동지원법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박은수·주승용·최철국·최문순·김춘진·이용섭·김재윤·안민석·송민순·강기정·김재균·최영희·백원우·이낙연·최종원·조영택·이미경·곽정숙·김영록·정하균·전현희·양승조·추미애 의원 발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윤석용·신학용·김동철·최인기·송광호·김성수·박은수·한기호·신성범·이종혁·권영진·심대평·안효대·이한성·현기환·곽정숙·안홍준·이주영·장제원·배영식·홍영표·정갑윤·유성엽·장윤석·허천·김재균·고승덕·김부겸·임영호·정양석·정해걸·최규성·김효재·이사철·김태환·최철국·여상규·조승수·장세환·변웅전·이진삼·황진하·김광림·원혜영·성윤환·강석호·김진표·정수성·이정현·류근찬·이범관·최병국·김기현·백성운·서상기·김충조·정범구·김성곤·이학재·신건·김창수·백원우·이명수·주광덕·공성진·이인제·김춘진·유원일·조진형·조해진·이인기·노영민·강기갑·조진래·전여옥·김진애·이성헌·홍희덕·원희목·추미애·조정식·윤상현·박기춘·박주선·윤영·정두언·이명규·최종원·정희수·이춘식·김태원·권택기·김정권·차명진·이철우·송훈석·김충환·황영철·박선숙·박우순·우제세·김성회·권경석·권성동·홍일표·박종근·강길부·김학송·김성순·변재일·우윤근·권선택·홍재형·이재선·안민석·이정희·서갑원·황우여·강승규·정두언·주승용·이윤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이사철·이윤석·정해걸·김우남·정갑윤·송훈석·김낙성·강석호·박준선·김태환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이사철·이윤석·정해걸·김우남·정갑윤·송훈석·김낙성·강석호·박준선·김태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이명수·김창수·임영호·김용구·이상민·권선택·김을동·김태원·임동규·안효대·윤상일 의원 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24 이명수·김을동·김태원·임동규·안효대·김소남·윤상일·권선택·이인기·임영호·김창수·김용구 의원 발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김소남·원희목·이해봉·이인기·이성헌·유기준·김성수·유정현·안홍준·김낙성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최재성·안민석·김상희·김효석·서갑원·강기정·이성남·이춘석·신건·이종걸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안홍준·이인기·유재중·현경병·송민순·원희목·이찬열·공성진·신상진·김소남·이애주 의원 발의)

이상 5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이명수·김용구·이상민·권선택·김을동·이인기·김태원·임동규·안효대·김소남·윤상일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안홍준·박순자·현경병·이한성·유재중·송민순·원희목·유성엽·이찬열·공성진·윤석용·신상진·김소남·이애주 의원 발의)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안홍준·이한성·이인기·현경병·유재중·송민순·원희목·이찬열·공성진·윤석용·신상진·김소남·이애주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안홍준·이한성·현경병·유재중·송민순·원희목·김호열·이찬열·신상진·이애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강창일·최규성·이종걸·추미애·조영택·이낙연·박기춘·장세환·박선숙·김영진 의원 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이명수·김을동·김태원·임동규·안효대·김소남·윤상일·권선택·이인기·임영호·김창수·김용구 의원 발의)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2010. 11. 24 국방위원장 제출)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

(2010. 11. 24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장 제출)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0. 11. 24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11. 24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2010. 11. 25 의장 제의)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6일간)

○의안 심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이정희·강기갑·강창일·고승덕·곽정숙·권영길·양승조·유원일·정동영·최문순·최재성·홍희덕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0. 2. 16 김재균·강기정·양승조·최철국·강창일·장세환·박은수·김동철·김영록·유원일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0. 4. 13 권성동·정옥임·고승덕·허천·홍영표·신학용·이종혁·이계진·안형환·이학재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지식경제위원장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

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7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27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11. 5 최영희・김상희・양승조・전현희・박은수・백원우・이찬열・김우남・송민순・이미경 의원 발의)

11월 9일 발의자 철회 요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4 조원진・김재윤・정희수・이두아・이명규・이사철・이진복・이한성・정병국・정해걸 의원 발의)

11월 10일 발의자 철회 요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0. 3. 30 이인기・유기준・오제세・이명수・이종혁・한선교・이한성・이두아・정수성・김춘진 의원 발의)

11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9. 5. 19 최인기・이용삼・김영록・전현희・강기정・김희철・김유정・우제창・문학진・김효석・이윤석・김종률・김낙성・주승용・이용섭・이인기 의원 발의)

2010년 11월 17일 발의자 철회 요구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 김정권・강길부・강용석・김성조・

김태원・김학용・나성린・윤석용・이인기・이종혁・최병국 의원 발의)

11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학력인정학교 학비지원 및 설립자 승계에 관한 청원

(2010. 11. 23 부산 사하구 장림동 60-13 (사)학력인정초중고등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권성태로부터 김세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철회**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에 관한 청원

(2008. 11. 21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현대제철(주) 정광하 외 1인으로부터 최철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10년 6월 25일 청원자와 소개의원 철회 요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2010. 4. 22 경기 양주시 남면 경신리 161-6 신동헌 외 504인으로부터 김성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8월 5일 청원자와 소개의원 철회 요구

○**의견서 제출**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결정문

(2010. 11. 17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추천의뢰서 제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0. 11. 11 정부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우체국 EMS에 관한 질문서

(2010. 11. 12 김성회 의원 제출)

고 김훈 중위 순직처리여부 심사에 관한 질문서

(2010. 11. 16 김성회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질문서(동두천지원특별법 처리 촉구관련)

(2010. 11. 2 김성수 의원 제출)

11월 12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질문서(동두천지원특별법 처리 촉구관련)에 대한 답변서

농산물 유통구조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0. 11. 11 정부 제출)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질문서(동두천지원특별법 처리 촉구관련)에 대한 답변서(2건)

(이상 2건 2010. 11. 12 정부 제출)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질문서(동두천지원특별법 처리 촉구관련)에 대한 답변서(2건)

내륙순환철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2010. 11. 15 정부 제출)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0. 11. 16 정부 제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한식재단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2010. 11. 17 정부 제출)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0. 11. 18 정부 제출)

우체국 EMS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0. 11. 19 정부 제출)

(이상 1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